

● 제332회 ●
서울특별시의회(임시회)
제2차 운영위원회

서울특별시의회 이커머스 시장의 여성 인력
취·창업 활성화를 위한 특별위원회 구성결의안
검 토 보 고 서

2025. 9. 10.

운 영 위 원 회
수 석 전 문 위 원

【서울특별시의회 이커머스 시장의 여성 인력 취·창업 활성화를 위한 특별위원회 구성결의안】

I. 결의안 개요

1. 제안자 및 제안경과

가. 제 안 자 : 이새날 의원(9명 찬성)

나. 제 안 일 : 2025. 8. 11.

다. 회 부 일 : 2025. 8. 14.

라. 의안번호 : 2992

2.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 전통적으로 여성 인력이 강세이던 패션·봉제·뷰티 산업은 디지털·AI 기술 도입, 그리고 온라인 플랫폼 중심의 비즈니스 모델로 급격히 재편되고 있음.
- 이커머스 시장의 폭발적 성장과 더불어 인플루언서 마케팅 전략 및 글로벌 직구 플랫폼 진출이 활성화됨에 따라, 기존에 패션·봉제·뷰티 산업 내에서 피고용인 또는 제조·판매업 종사자로 일하던 여성 인력들이 전통적 고용 형태에서 벗어나, 제조부터 유통·판매에 이르기까지 이커머스 생태계 전반에서 주체적 창업자 및 판매자로서 역할을 확대하고 있음.

- 이러한 구조적 변화에 발맞춰, 경력단절 여성 및 미취창업 여성 등 여성 인력들이 이커머스 시장에서 주도적인 창업자 및 판매자로 전환할 수 있도록 취·창업 활성화 지원 정책 및 프로그램의 체계적 마련이 절실함.
- 이에, 서울특별시의회 차원에서 기존의 여성 역량 강화 및 취·창업지원 현황을 면밀히 분석하고, 급변하는 디지털 이커머스 환경에서 여성 경제활동 경쟁력을 제고할 수 있는 혁신적이고 실효성 있는 대안을 모색하여 여성 경제참여 활성화를 위한 새로운 전략적 시각을 구축하고자 함.

3. 참고사항

- 가. 관련 법령 : 「지방자치법」, 「서울특별시의회 기본 조례」, 「서울특별시 여성의 경제활동 촉진과 경력단절 예방에 관한 조례」
- 나. 예산 조치 : 해당사항 없음
- 다. 기 타 : 해당사항 없음

Ⅱ. 검토의견 (수석전문위원 최현재)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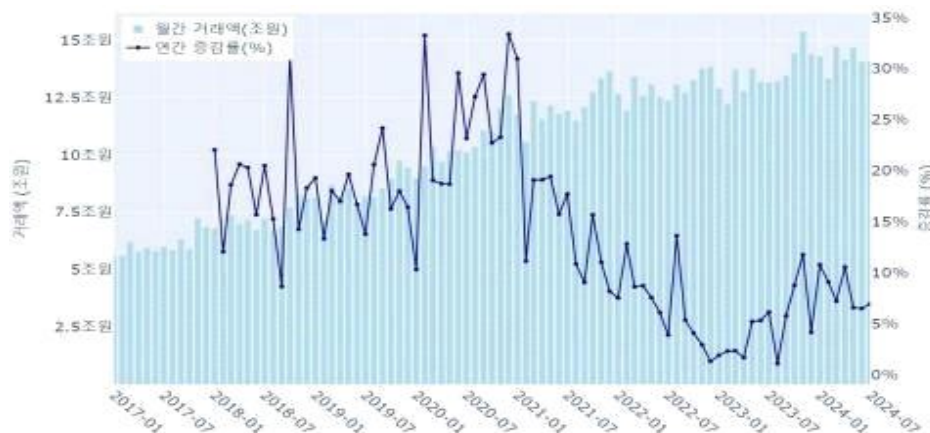
1 특별위원회 구성결의안의 취지

- 본 결의안은 서울시의회 차원에서 급변하는 디지털 이커머스 환경 속에서 서울시 차원 패션·봉제·뷰티 산업 분야 여성 인력의 취·창업을 지원하기 위한 정책적 시각을 모색하고, 디지털 이커머스 환경에서의 여성 경쟁력 제고 방안을 마련하고자 특별위원회 구성을 제안함.

2 특별위원회 구성의 타당성 검토

- 전통적으로 여성 인력이 강세를 보였던 패션·봉제·뷰티 산업이 디지털·AI 기술 도입, 온라인 플랫폼 중심의 구조로 급속히 재편됨에 따라, 고용구조 변화 가능성에 대한 심도 있는 논의가 필요한 상황에 직면하였음.
- 2023년 ‘온라인 쇼핑 거래액’은 227조 3,470억원이며 이 중 ‘쇼핑’ 분야에 해당하는 ‘상품’ 거래액은 161조 8,378억원으로 약 71.2%를 차지함. 2017년 1월부터 2024년 7월까지 온라인 쇼핑 상품 거래액은 지속적인 증가 추세임.¹⁾

< 2017 ~ 2024 온라인 쇼핑 상품 거래액(월별) >



1) 통계청 국가통계포털(<http://www.kosis.kr>), 공정거래위원회 재구성 인용.

- 특히, 패션·봉제·뷰티 산업과 연관성이 큰 섬유 및 가죽 산업은 최근 5년간 여성 창업기업 비중이 지속적 증가했고, 산업 간 비교에서도 여성 창업자의 비중이 가장 높은 업종으로 나타났다.²⁾

< 2020~2024년 업종별 여성 창업자 비중 >

(단위 : %)

순위	업 종	2024	2023	2022	2021	2020
1	섬유 및 가죽	49.6	47.2	46.3	44.7	40.7
2	음식료품 및 음료	48.8	50.5	52.0	51.9	48.8
3	인쇄 및 기록매체 복제업	42.7	38.6	33.4	34.2	35.0
4	기술기반업종	41.3	41.2	41.6	41.4	40.5
5	기타제조업	32.1	35.0	30.9	31.3	31.0
6	고무 및 화학제품	31.6	30.0	30.6	30.2	30.1
7	목재, 가구 및 종이제품	30.3	27.4	30.6	29.8	31.2
8	자동차 및 운송장비	23.9	23.3	24.2	23.3	23.5
9	기계, 금속	23.8	23.7	22.9	21.6	23.1
10	전기·전자 및 정밀기기	23.4	23.2	24.2	24.2	23.5
-	소계	44.7	45.1	45.5	46.1	46.2

- 기존 패션·봉제·뷰티 산업 종사 여성 인력들은 디지털·AI 기술의 도입과 온라인 플랫폼 중심 구조로 시장 상황이 변화함에 따라 고용구조 변화에 대응해야 하는 상황에 직면하였고, 이에 이커머스 분야 취·창업 진입 수요 및 플랫폼 운영·디지털 마케팅 역량 강화에 대한 요구도 함께 증가하고 있음.
- 관련하여, 현재 서울시 차원에서 패션·봉제·뷰티 산업의 상권 활성화와 디지털·이커머스화 정책을 시행하고 있지만, 여전히 기존 사업자 중심의 지원 정책에 머물러 있어 산업구조를 고려한 여성 맞춤형 취·창업 지원이 필요함.
 - 서울시는 뷰티·패션 산업 활성화 지원 및 글로벌커머스 사업 운영 지원을 통해 뷰티·패션 산업의 성장동력 강화와 전자상거래 플랫폼화를 추진하고 있으며, 서울경제진흥원을 통해 패션·뷰티 산업 활성화를 지원하고 있음.

2) 통계청 국가통계포털(<http://www.kosis.kr>), 중소벤처기업부 창업기업동향 업종별, 성별 창업기업수 자료 재구성.

〈서울시의 뷰티·패션 산업 활성화 정책〉

사업명	주요 내용	기대 효과
런웨이투서울	신인 디자이너 발굴 및 육성	창의적 패션 인재 육성
	신개념 융합 패션쇼 개최	신진 디자이너 브랜드 성장 기반 마련
	패션·테크 커머스 활성화 지원	
비더비(Be the B)	민간 온라인 플랫폼 연계	서울 뷰티산업 경쟁력 강화
	유망 뷰티 기업 발굴 및 지원	혁신형 뷰티 스타트업 성장 촉진
	뷰티·테크 기업 체험형 전시 지원	
DDP쇼룸	동대문 소재 패션·테크·아트 융합 랜드마크	동대문 패션산업 고급화
	상권 활성화 및 패션산업 성장동력 강화	글로벌 패션허브 위상 제고
글로벌커머스 협업	알리바바, 쿠팡 등과의 협업	글로벌 시장 진출 확대
	서울 패션브랜드 해외 판로 개척	동대문 패션 고급화
	패션 셀러 교육·홍보·인프라 지원	지속 성장 기반 마련

- 참고로, 중앙정부는 「디지털 플랫폼 정부 추진계획」(2022) 및 「여성 경제활동 촉진 기본계획」을 통해 여성 맞춤형 창업·취업 지원을 강조하고 있고, 중소벤처기업부의 「여성기업 종합지원대책」, 고용노동부의 「여성 새로일하기센터」를 통해 ICT·이커머스 분야 진출 지원을 점차 확대하고 있음. 공정거래위원회, 산업통상자원부 또한 온라인 거래 질서 확립, 해외 판로 지원 정책을 병행 추진 중임.
- 한편, 서울시에서도 여성발전센터³⁾와 여성인력개발센터⁴⁾를 중심으로 여성의 경제활동 촉진과 경력 단절 예방을 위한 「서울우먼업 프로젝트」⁵⁾등을 시행하고 있음.
- 그러나 이들 정책은 대체로 일반적인 취·창업 지원에 머물러 있으며, 급변하는 이커머스 시장 환경에 대응하기 위한 전문적이고 특화된 지원은 부족한 측면이 있음.

3) 직업훈련프로그램 개발·운영, 여성창업플라자 등을 통해 여성의 취·창업을 확대하고 능력 개발을 지원함.

4) 직업교육훈련과 맞춤형 취업 정보 제공을 통해 여성의 경제활동 참여를 촉진함.

5) 경력 단절 여성들에게 구직지원금, 인턴십, 고용장려금 등 ‘우먼업 3종 세트’를 지원함.

- 따라서 이커머스 시장에서 성과를 창출하기 위해서는 플랫폼화 전략, 글로벌 마케팅, 데이터 활용 역량 등 특화된 지원 체계가 필요하며, 특히 창업 역량 증진을 직접 지원할 수 있는 구체적 방안 마련이 요구됨.
- 이에, 여성 역량 강화 및 취·창업지원 현황을 면밀히 분석하고, 급변하는 디지털 이커머스 환경에서 여성 경제활동 경쟁력을 제고할 수 있는 혁신적이고 실효성 있는 대안을 모색하기 위해 특별위원회를 구성하는 것임.
- 아울러 본 특별위원회에서 다룰 논점들은 현재 여성 경제활동 촉진과 경력 단절 예방을 담당하는 여성가족실을 소관하는 보건복지위원회와 서울시 뷰티·패션 산업 경쟁력 강화·활성화를 담당하는 경제실을 소관하는 기획경제위원회와 관련됨.
- 따라서 특별위원회의 활동을 위해서는 여성가족실(보건복지위원회), 경제실(기획경제위원회) 등 여러 소관 부서 간의 업무 연계가 필수적임.⁶⁾

6) 「서울특별시의회 기본 조례」 제37조(특별위원회) ① 의회는 여러 상임위원회의 소관과 관련되거나 특히 필요하다고 인정한 안건을 효율적으로 심사하기 위하여 의회의 의결로 특별위원회를 둘 수 있다.

3 관련 상임위원회 의견 조희 결과

○ 결의안과 관련하여 「서울특별시의회 기본조례」 제37조제2항⁷⁾에 따라 관련 상임위원회 사전협의 결과는 다음과 같음.

- 여성가족실을 소관하는 보건복지위원회는 사전협의와 업무지원에 대해 동의하였고, 경제실을 소관하는 기획경제위원회는 사전협의에 대해서 동의하였음.

담당 연락처

02-2180-7683

7) 「서울특별시의회 기본 조례」 제37조(특별위원회) ② 제1항에 따라 특별위원회를 구성하고자 하는 경우 관련된 상임위원회와 사전에 협의해야 하며, 운영위원회가 특별위원회 구성안을 심사할 경우에도 관련된 상임위원회의 의견을 들어야 한다.